Harrington Place

■ 해링턴플레이스 다산파크 분양권전매 명의변경 서류안내

구분	양도인	양수인
대리인 여부	반드시 본인	대리인 가능
공통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권리의무 승계확약서(견본주택 비치)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수입 인지금액 : 150,000원) 6. 인지세 과세대상통지확인서(견본주택 비치) ※ 금액은 상호 협의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아파트공급계약서 원본 + 별도확인서 추가설치품목(옵션)계약서 + 추가선택품목(냉장고)계약서 2.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3. 중도금대출 상환영수증_대출상환자에 한해 명의변경 가능 4. 이자후불제 이자 완납 이체 영수증 5. 잔금에 대한 연체료 완납 이체 영수증_명의변경일 기준	1. 매매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및 매매 계약서 증여시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원본 2. 인감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취급 및 활용 동의서(견본주택 비치)
대리인 서류	대리인 불가 (반드시 본인 참석)	1.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2. 양수인 인감증명서 1부 추가 3.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약정금액 미납(잔금연체등)의 경우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 잔금 납부 이전 명의변경을 접수하여야 하며, 잔금납입 이후에는 절대 명의변경 불가
- 양도인은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불출은 우편발송은 불가하며, 매수인 직접방문 후 수령 가능합니다.